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누64670 지방소득세징수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, [redacted], 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3구합12072 판결

변 론 종 결 2020. 4. 3.

판 결 선 고 2020. 5. 8.

주 문

1.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,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가 2013. 3. 8. 원고에 대하여 한 2006. 4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68,851,730원(가산세 포함), 2007. 4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86,777,470원(가산세 포함), 2008. 1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2,507,188,17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징수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,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가 2013. 3. 8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. 3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 26,913,260원(가산세 포함), 2008. 5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2,952,7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[청구취지 가, 나항과 관련하여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'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'은 오기로 보인다]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3. 3. 8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. 3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26,913,260원(가산세 포함)의 징수처분 중 14,358,228원(가산세 포함), 2008. 5.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2,952,760원의 징수처분 중 1,575,301원(가산세 포함)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, 제13행, 제14, 15행, 제16행, 제17행의 각 "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"를 "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"로, 제16면 제4행(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)의 "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"를 "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"로, 제17면 제10행의 "구 지방세법 제197조의3"을 "구 지방세법 제179조의3"으로, 제18면 제12행의 "당해 증액경정처분"을 "법인세(원천징수분) 증액경정처분"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(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785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결과 '신고·납부하는 법인세' 내용에 오류·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으로, 법인세를 '원천징수'하는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에 대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므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).

다)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 다툼이 있어 과세표준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'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, 독촉 또는 납입최고, 교부청구, 압류'만을 규정하고 있는바(이후 지방세법은 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, 지방세기본법이 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면서 제40조 제1항에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과 그 표현만 일부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다),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6. 4., 2007. 4., 2008. 1.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(특별징수분) 징수처분(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)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, 나머지 각 징수처분(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)의 취소청구 부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